





취당을 다음과 같은 여건으로 남애문 근로자 합숙소강  
에게 그 관외권을 이양한다.

가. 건물 및 취당의 시설이 충분하다.

나. 취당상으로 보아 <sup>남애문</sup> 남애문 관외취당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이용자의 불편이 없다.

### 3. 시설물의 처리

가. 배부적인 시설 일체를 (중수를 제공할수  
있는 범위) 남애문 근로자 합숙소에 인계한다.

나. 건물 자체 및 부속물은 앞으로 증액할  
부양아의 수용시설로 아동보육소에서 철거 <sup>이설</sup> 이설한다.

다. 건물 및 부속물의 철거 경비는 아동보육소  
에서 부담한다.

라. 인적사항 (조각사 1명, 취사부 3명)은

삼대문 근로자 합숙소에 인제한다.

4. 절차 문제.

가. 고시 (告示) (별안 1)

나. 중구경찰의 운영권 정지 명령 및 삼대문  
근로자 합숙소장에 대한 운영권 부여 명령.

다. 사무의 인수 인계.

(1) 개부 4월 인수 인계 원시.

서기 1962년 4월 ~~20~~<sup>23</sup>일

(2) 건물 및 부속물 철거 인수 인계 원시

서기 1962년 4월 ~~20~~<sup>23</sup>일

(별안 1) 고시 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680호

서울특별시립 준비수당 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립 삼대문 준비수당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 ~~코~~한다.

사기 1962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강 유 래 일

- 1. 현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도동 1가 92
- 2. 변경된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도동 1가 68  
(시립 삼대문 근로과 합주소재)

(별안 2)

수신	배부처 참조	발신	의명 총무과장
제목	설비수당의 위치변경과 운병권의 이양		

1. 서울특별시립 삼대문 설비수당의 위치가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음.

- 가. 현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도동 1가 92
- 나. 변경된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도동 1가 68

2. 종전 동수당에 대한 중구청장의 관리운병권  
을 1962년 4월 12일자로 서울특별시립 삼대문  
근로과 합주소장에게 이양하고자 양력하시기 바랍.

3. 이에 따른 인수인계에 필요한 제반운영  
모든 것을 갖추어 다음에 의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주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 인수인계 일시

1962년 4월 ~~20~~<sup>23</sup>일

나. 인수인계 사항

- (1) 전체운영 상황 (서류일체)
- (2) 예산 집행 상황
- (3) 집기 및 비품
- (4) 인력 사항 (조리사 1명, 청소부 3명)
- (5) 기타 사무용품

다. 건물 및 부속물은 아동보호소에서 현저  
인수하며 그 경비도 부담한다.

(1) 인수인계 일시

1962년 4월 ~~20~~<sup>23</sup>일

(2) 건물 및 부속물에 대한 지증빙서류 (부속)

배 부치.

1. 중구침강
2. 삼계문 근로가 함우소강
3. 아동보호소강